

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의안
번호

제2972호

박춘선 의원 (국민의힘, 강동구3)

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
☐ 본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☐ 최근 줍깅은 환경보전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운동으로, 주민 참여와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.

☐ 이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줍깅 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.

☐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, 그리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.

☐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줍깅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환경보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
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